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0.(화) (국무회의 안건보고후, 별도공지) 배포 2026. 11. 9.(월)

올겨울, 먼저 찾아가는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 중단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찾아주는 '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시행
-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신설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대폭 확대(5.9만 → 12.2만)
- 가격 급등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바우처 추가 지원(가구당 14.7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될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과 함께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신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확대,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추가지원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2026년) 지원 가구 수를 전년보다 4만 가구 확대(2025년 140만→2026년 144만)하고, 예산도 227억원 증액(2025년 4,815억 원→2026년 5,042억 원)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①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까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고령·장애 등으로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수고스럽게 방문하지 않아도 바우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3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②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전 현금지원 신설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전 현금지급'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11월부터 사전에 신청한 약 5,3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난방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가구 대폭 확대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바우처가 발급되었음에도 미사용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전액 미사용 가구 5.9만 가구를 방문하여 약 99억 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고, 올해는 전액 미사용 가구뿐만 아니라 50% 미만 사용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최대 12만 2천 가구를 방문한다.

방문 과정에서 카드 발급, 사용방법 안내, 주거환경별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

④ 가격이 급등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대상 바우처 추가 지원

갑작스러운 중동전쟁 및 고환율 영향으로 유가상승 영향을 직접 받게 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약 21만 가구)에 대해서는 14만 7천 원 상당의 추가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평균 36만 7천 원에서 51만 4천 원으로 늘어나 급등한 난방비 사용 부담이 줄어든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별도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⑤ 공급중단 유예조치 등 에너지 복지 수용성 확대

요금 체납으로 난방과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절기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지난해(2025년)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 중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과 이용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여 촘촘한 에너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개요.
2. 사전 예외지급 개요
3.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개요.
4. 26년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 추가지원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이승준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양동춘 (044-201-6638)
		담당자	사무관	경선희 (044-201-69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에너지바우처 **자동전환 시** 세대원 수, 수급자 사망 등 **정보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중지상태로 전환**되어 수급자의 **재신청이 필요**

- 문자·우편으로 재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고령·장애인 세대의 경우 조치 애로가 있어 바우처 미사용 발생

○ **(목적) 중지세대**에 발신 전화를 통해 **동의 확보 후 직권 재신청 처리**함으로써 수급자 **방문 없이**도 바우처 **사용 가능 상태로 전환**

□ 세부 내용

○ **(추진대상)** 에너지바우처 중지상태인 2.5만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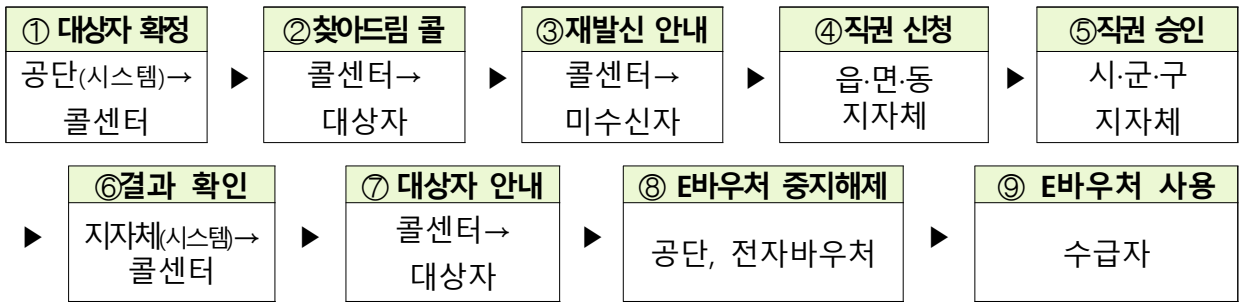
○ **(추진내용) 바우처 지원이 중지된 세대** 중 재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 **발신 전화를 통해 의사를 확인 후 직권 재신청 동의 확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확보된 동의로 공무원이 직권 재신청**하여 **중지된 에너지바우처 사용 도모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추진 절차	상세 내용
① **대상자 확정**	· 에너지바우처 중지자 중 재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확정 추출
② **찾아드림 콜**	· 대상자 직권신청 희망조사·접수 및 녹취 동의 확보
③ **재발신 안내**	· 찾아드림 콜 미수신자의 경우 최대 3회 까지 재발신 실시
④ **결과 확인**	· 시스템을 통한 동의자 지자체 직권 신청 처리 여부 확인
⑤ **대상자 안내**	· 지자체 직권 신청 처리결과 대상자 안내(완료→문자, 불가→해피콜)

□ 추진 체계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dream) 운영 흐름도>



붙임 2 사전 예외지급 제도 개요

□ **(사업 내용)**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 에너지비용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유형①**에 **해당**하는 **수급자** 중 사전 예외지급 신청기간 시점에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자**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대상자 유형① >

○ **(유형1)**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자**

*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 ②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 ③중앙난방

□ **(신청 기간)** 2026. 6. 15.(월) ~ 2027. 5. 31.(월)

○ **(제출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제외), 주거환경 증빙서류(입실확인서 또는 실거주확인서)

□ **(지급기간 및 지급액 산정기준)**

○ **(1차)** '26.10월 말 기준 신청 건은 '26.11.12.에 지급

- **(지급액)**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

*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 사용한 세대의 평균 사용액으로 함(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 단위까지 산출)

○ **(2차)** '26.11월 이후 신청 건은 '26년도 사후 예외지급 기간에 지급

- **(지급액)**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

*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 사용한 세대의 평균 사용액으로 함(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 단위까지 산출)

□ **(지급 방식) 사전 예외지급 입금액은 수급자 본인계좌에만 입금**

○ 수급자 본인 계좌가 압류방지계좌인 경우 입금 불가능

- 압류방지 계좌밖에 없는 경우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여 신청

* **생계비 계좌** : 채무가 있어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26.2월 시행)

○ 세대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계좌로 대신 수령 불가능

붙임 3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개요

□ 사업 개요

○ (지원 체계)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와 사회복지사 등을 조사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체계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운영

* 연중 발생하는 미사용, 중지 등 세대에 문자, 우편 통해 수시 안내 병행

<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관리체계 >

	(기존) 정보전달형 안내	('24년~)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구분	❶단계 → 1:1 안내	❷단계 → 복지등기	❸단계 돌봄서비스
추진내용	■ 바우처 사용 안내 (문자, 우편)	■ 신청·사용 안내등기 ■ 제도 인지도 조사	■ 맞춤형 방문·동행 지원 ■ 에너지사용 컨설팅
위기대상	■ 당해연도 미사용·저사용 등 * 미사용·저사용 세대, 중지 세대, 미신청 세대	■ 2년 연속 미사용* (❶단계 후 미사용 세대) * 전액·동절기 미사용	■ 3년 연속 미사용 (❶, ❷단계 후 미사용 세대) ■ 기타 위기세대 (❷단계 발굴 도움 필요 세대

□ 사업 세부 내용

○ (복지등기) 전국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 미사용 세대를 방문하고 미사용 사실 인지, 사용 안내, 미사용 사유 등 **실태조사 실시**

○ (돌봄서비스) 조사원을 활용, 미사용 세대를 방문하고 바우처 사용지원과 냉난방 환경에 맞는 에너지 사용 컨설팅 실시

맞춤형 사용 지원 사례

▸ **(문제점)** (사례1)이사 등으로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중지되어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2)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사용 못한 경우, (사례3) 거동불편 또는 인지 부족으로 카드 사용법을 알지 못한 경우, (사례4) 보일러 노후화·고장으로 난방이 불가능한 경우

▸ **(해결방법)** (사례1)읍면동에 유선, 동행하여 정보변경 신청을 도와드림, (사례2) 카드사, 은행에 유선, 동행하여 실물카드 발급을 도와드림 (사례3) 인근 에너지판매소에 유선, 동행하여 결제를 도와드림, (사례4) 효율개선사업을 대신 접수, 재단으로 연계하여 보일러를 교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림

□ **사업 실적**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추정)
지원가구 수(세대수)	32,181	59,070	122,000
바우처사용액(백만원)*	3,474	9,904	14,777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통한 지원가구의 바우처 첫 또는 추가 사용액

붙임 4 **2026년도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 추가 지원 개요**

□ 지원 개요

○ **(지원내용)** 겨울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용을 추가로 지원

*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고환율로 연료비 인상 영향도가 높은 등유·LPG 사용세대

○ **(지원금액)** 세대원 수 구분 없이 147,000원 지원

(現 바우처 수급세대당 평균 36.7만원 → 확대 51.4만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추가금 충전

○ **(사용기간)** '26. 12월 9일(수)(예정) ~ '27. 5. 31.(월)

○ **(지원대상(안)) 등유·LPG가 주(主) 난방원인** 에너지바우처(연탄전환 포함) **수급자**

- **(유형 ①)** '25년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전출입 없이,** '25년도 또는 '26년도 **바우처 발급액의 50% 이상을 등유·LPG 구매에 사용**

 * '25년도 국민행복카드 사용개시일

- **(유형 ②)** 유형 ①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근 전출입 이후의 **'26년도 바우처 사용 이력에 등유·LPG는 존재, 지역난방, 도시가스는 비존재**

 ※ 단, '26년도 바우처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25년도 바우처에서 확인

- **(유형 ③)** 유형 ①, ②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자체에서** 주 난방원으로서 **등유·LPG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수급자**

 * 등유·LPG 보일러를 설치하였거나 등유·LPG 구매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영수증, 현장사진 등)

【 참고. 지원제외 대상 】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6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6년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③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④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